

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이 명박 □

2011년 5월 24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
지식경제부 최종경

장관

◎ 법률 제10716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

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

2.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

제63조의2 단서 중 “제42조제8항” 을 “제42조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8항” 으로 한다.

제133조제1항제1호 중 “제25조, 제29조, 제32조,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, 제4항”

을 “제25조, 제29조, 제32조,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” 으로

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3항, 제63조의2 및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,

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되,
특허등록 이

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. 보완

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